

3. 宅地開發促進法施行令中 改正令(案) 立法豫告

建設部公告第1993-58호 1993. 4. 24

1. 개정이유

경제행정규제완화 추진시책의 일환인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유치원용지의 용도제한을 일부 완화하고,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과 관련하여 구비서류를 간소화하며, 기타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
2. 개정안의 주요내용

- 가. 택지개발계획의 토지이용계획상 유치원용지로 계획된 부지의 경우 종전에는 타용도로의 사용을 제한하였으나, 앞으로는 토지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부지의 2분의 1이상은 유치원으로 사용토록하고 그 나머지는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독서실, 예체능계 학원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.
- 나. 토지를 협의양도한 자중 수의계약방법으로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를 예정지구 지정 고시일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로 한정하므로써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함.

다.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서 지구지정이전에 이미 허가를 받아 공사진행중인 건축물이나 공작물등에 대하여 시장·군수가 공사중지 또는 조정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추후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손실과 민원을 최소화함.

라.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및 고시시 수용할 토지세목조서를 각각 제출하고 고시토록 하던것을, 수용할 토지세목이 개발계획과 동일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에서 이의 제출 및 고시를 생략하도록 하여 행정서류의 간소화를 도모함.

3. 의견제출

이 법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3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 건설부장관(참조: 주택국장, 전화번호: 503-7365~6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이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